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현장체험학습 계획수립 부적정

관 계 기 관 효성유치원

내 용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관리 조례」 제4조(체험학습 기본계획) 및 시행규칙 제4조(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공동 준수 사항에 의하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은 도교육청 각 부서 기본계획서의 안전 계획을 우선 적용하고, 방침이 없을 경우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학교장의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확보한 후 아래 사항을 포함한 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 방안
- 학생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학생 안전대책 방안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특히, 별도의 계획이 시행되는 유치원, 특수학교(급), 체육활동(생존수영 등) 관련 계획은 각 부서의 자체 안전 계획 및 매뉴얼이 우선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유아교육과 유치원 안전교육 길라잡이」에 따르면, 유치원 현장학습시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현장답사 전에 교육장소 및 시설, 차량이동, 교육프로그램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효성유치원에서는 [표]와 같이 유치원 현장학습을 가면서 사전 답사 없이

진행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 2016 ~ 2018 현장학습 현황

학년도	지출일자	적요	계정과목	증빙서 번호	지출액(원)
2016학년도	09.03	***체험학습비	현장학습비	881	1,109,600
	11.06	****생태공원입장료	현장학습비	1260	34,400
	11.17	****입장료	현장학습비	1450	1,365,000
2017학년도	03.25	딸기체험비 ***	현장학습비	142	1,280,000
	04.07	(주)****입장료 41명	현장학습비	172	410,000
	05.27	갯벌체험비	현장학습비	453	1,704,000
	06.10	물놀이캠프 및 체험가이드비	현장학습비	653	1,379,400
	06.10	5세견학(***우주센터외)	현장학습비	654	445,500
	11.07	*****박물관 입장료	현장학습비	1478	164,500
	02.05	****입장료	현장학습비	1769	1,526,000
2018학년도	03.21	***** 견학입장료	행사비	74	12,000
	04.11	****생태공원 입장료	행사비	197	46,320
	04.11	****박물관 입장료	행사비	245	9,000
	04.11	****나라 입장료 -6세	행사비	368	108,000
	07.06	*****박물관 입장료	행사비	650	112,000
	07.06	****입장료	행사비	696	120,000
	11.14	****생태공원 입장료	행사비	1298	47,600
	02.19	****견학-***반,***반	행사비	1782	600,000

조치할 사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 ① 앞으로는 관할 소속 유치원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케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효성유치원
 내 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하면, 아동 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 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효성유치원에서는 당해 연도 담임교사, 보조교사,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교직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표1,2]와 같이 당해 연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서가 없거나 조회 회신서가 채용계약일 이후에 성범죄경력 및 아동 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가 발급됨으로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 회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1] 교직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업무 부적정 현황

회계년도	성명	채용계약일자	직책	신청일시
2016년도	○○○	2016.03.01	조리사	2016.03.18

	○○○	2016.03.01	담임교사	2016.03.18
	○○○	2016.03.01	담임교사	2016.03.18
	○○○	2016.03.01	직원	2016.03.18
	○○○	2016.03.01	담임교사	2016.03.18
	○○○	2016.03.01	부담임	2016.03.02
	○○○	2016.03.01	담임교사	2016.03.18
	○○○	2016.03.01	부담임	2016.03.02
	○○○	2016.03.01	차량기사	2016.03.18
	○○○	2016.03.01	담임교사	2016.03.18
	○○○	2016.03.01	보조교사	2019.08.30
	○○○	2016.03.01	시설관리	2019.08.30
	○○○	2016.03.01	담임교사	2016.03.18
2017년도	성명	채용계약일자	직책	경찰서 회신일자
	○○○	2017.03.01	행정직원	2017.06.16
	○○○ LA C	2017.03.01	영어교사	2017.06.14
	○○○	2017.03.01	담임교사	2017.06.14
	○○○	2017.03.01	담임교사	2017.06.14
	○○○	2017.03.01	담임교사	2017.06.14
	○○○	2017.03.01	담임교사	2017.06.14
	○○○	2017.03.01	담임교사	2017.06.14
	○○○	2017.03.01	담임교사	2017.06.14
	○○○	2017.03.01	담임교사	2017.06.14
	○○○	2017.03.01	담임교사	2017.06.14
	○○○	2017.03.01	담임교사	2017.06.14
	○○○	2017.03.01	담임교사	2017.06.14
	○○○	2017.03.01	직원	2017.06.14
	○○○	2017.03.01	조리사	2017.06.14
	○○○	2017.03.01	직원	2017.06.14
	○○○	2017.03.01	차량기사	2017.06.14
	○○○	2017.03.01	보조교사	2017.08.29
○○○	2017.03.01	보조교사	2017.08.29	

[표2]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업무 부적정 현황

회계년도	성명	채용계약일자	특성화명	경찰서회신일자
2016년도	○○	2016.03.02	블럭	서류없음
	○○○	2016.03.02	***	서류없음
	○○○	2016.03.02	오르프	서류없음
	○○○	2016.03.02	동화구연	서류없음
	○○○	2016.03.02	미술	서류없음
	○○○	2016.03.02	발레	서류없음
	○○○	2016.03.02	축구	서류없음
	○○○	3016.03.02	축구	서류없음
	○○○	2016.03.02	국악	서류없음
	○○○	2016.03.02	클레이	서류없음
	○○○	2016.03.02	**과학	서류없음
2017년도	○○○	2017.03.02	요가/방송댄스	2017.03.23
	○○○	2017.03.02	방송댄스	2017.03.23
	○○○	2017.03.02	발레	2017.03.23
	○○○	2017.03.02	축구	2017.03.23
	○○○	2017.03.02	***	서류없음
	○○○	2017.03.02	오르프	서류없음
	○○○	2017.03.02	동화구연	서류없음
	○○○	2017.03.02	동화구연	2017.03.23
	○○○	2017.03.02	**과학	서류없음
	○○○	2017.03.02	미술	서류없음
	○○○	2017.03.02	미술	서류없음
	○○○	2017.03.02	국악	서류없음
	○○○	2017.03.02	클레이	2017.03.23
2018년도	○○○	2018.03.02	방송댄스	서류없음
	○○○	2018.03.02	방송댄스	서류없음
	○○○	2018.03.02	공놀이	서류없음
	○○○	2018.03.02	체육	서류없음
	○○○	2018.03.02	***	서류없음
	○○○	2018.03.02	오르프	2018.03.06
	○○○	2018.03.02	동화구연	서류없음
	○○○	2018.03.02	**과학	서류없음
	○○○	2018.03.02	미술	서류없음
	○○○	2018.03.02	미술	서류없음
	○○○	2018.03.02	클레이	서류없음
	○○○	2018.03.02	클레이	서류없음
	○○○	2018.03.02	발레	서류없음
	○○○	2018.03.02	발레	서류없음

조치할 사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 ① 앞으로는 관할 소속 유치원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케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급여 및 연말정산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효성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 명시)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주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금의 구성·계산방법·지급방법·항목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7조(원천징수의 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같은법 시행령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에 의거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효성유치원은 원장 ○○○의 급여와 관련 2016~2018년 3개년 동안 총 21,000,000원을 원천징수 누락신고하였으나, 이중 18,000,000원을 보전(2019.09.25.)하여 최종 3,000,000원을 누락신고 하였으며,

1. 원장 ○○○ 급여 및 원천징수 현황

(단위 : 원)

구분	현금출납부(a)	원천징수영수증(b)	차이금액 (c=a-b)	비고
2016년 (1월~12월)	106,500,000	103,500,000	3,000,000	
2017년 (1월~12월)	146,062,030	127,062,030	19,000,000	19,000,000원 중 2019.9.25. 18,000,000 일부보전
2018년 (1월~12월)	131,600,000	132,600,000	-1,000,000	
합계	384,162,030	363,162,030	21,000,000	총 차이금액 중 18,000,000원 보전하여 3,000,000원 국세청신고액

또한, 원장의 남편이자 행정실장인 □□□의 급여와 관련 2016~2018년 3개년 동안 총 35,200,000원을 원천징수 누락 신고하였으나, 이중 25,000,000원을 보전(2019.09.22.) 하여 최종 10,200,000원을 누락신고한 사실이 있다.

2. 행정실장 □□□ 급여 및 원천징수 현황

(단위 : 원)

구분	현금출납부(a)	원천징수영수증(b)	차이금액 (c=a-b)	비고
2016년 (1월~12월)	18,800,000	0	18,800,000	2019.09.22. 전액보전
2017년 (1월~12월)	51,400,000	45,000,000	6,400,000	6,400,000원 중 2019.09.22. 6,200,000 일부보전
2018년 (1월~12월)	101,000,000	91,000,000	10,000,000	
합계	171,200,000	136,000,000	35,200,000	총 차이금액 중 25,000,000원 보전하여 10,200,000원 국세청신고액

조치할 사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 ① 앞으로는 관할 소속 유치원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케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하고 13,200,000원을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및 건강/요양보험 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효성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에 의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에 따라 사학연금의 개인 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금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효성유치원에서는 [표1] “사학연금 납부액(개인부담금) 및 개인별 공제금액 차액 현황” 과 [표2] “건강/요양보험료 납부액(개인부담금) 및 개인별 공제금액 차액 현황” 과 같이 2016~2018회계연도 중 효성유치원 소속 교원 및 직원들의 사학연금과 건강/요양보험료의 개인별 공제금액을 실제 납부금액과 상이하게 징수하였고, 이로 인해 사학연금은 총 5,869,741원을, 건강/요양보험료는 총 309,046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연금등 납부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2016~2018 사학연금 납부액(개인부담금) 및 개인별 공제금액 차액 현황

구분	성명	금여 공제액	납부액	차액
교원	○○○	21,557,109	26,440,980	-4,883,871
	○○○	5,334,820	5,505,020	-170,200
	○○○	4,797,520	4,941,740	-144,220
	○○○	2,306,820	2,161,060	145,760
	○○○	4,563,120	4,735,260	-172,140
	○○○	1,483,800	1,341,300	142,500
	○○○	4,566,400	4,698,160	-131,760
	○○○	1,302,840	1,266,680	36,160
	○○○	1,194,270	1,266,680	-72,410
	○○○	1,430,040	1,388,900	41,140
	○○○	2,816,440	2,799,220	17,220
	○○○	2,816,440	2,799,220	17,220
	직원	○○○	4,204,250	4,390,700
○○○		3,683,630	4,364,460	-680,830
○○○		695,280	722,240	-26,960
○○○		1,542,750	1,281,700	261,050
○○○		1,791,840	1,800,640	-8,800
○○○		2,016,120	2,025,400	-9,280
○○○		336,630	374,000	-37,370
○○○		1,326,000	1,332,500	-6,500
합계		69,766,119	75,635,860	-5,869,741(㉠)

【표2】 2016~2018 건강/요양보험료 납부액(개인부담금) 및 개인별 공제금액 차액 현황

구분	성명	금여 공제액	납부액	차액
교원	○○○	10,141,760	9,823,700	318,060
	○○○	2,318,080	2,315,900	2,180
	○○○	2,030,680	2,054,990	-24,310
	○○○	983,220	998,340	-15,120
	○○○	2,030,680	2,054,990	-24,310
	○○○	604,560	648,700	-44,140
	○○○	1,922,580	1,951,560	-28,980
	○○○	531,000	561,000	-30,000
	○○○	486,750	531,000	-44,250

구분	성명	급여 공제액	납부액	차액
	○○○	565,080	567,660	-2,580
	○○○	1,116,520	1,116,220	300
	○○○	1,116,520	1,116,220	300
직원	○○○	3,406,180	3,294,170	112,010
	○○○	1,778,472	1,849,380	-70,908
	○○○	1,532,802	2,006,430	-473,628
	○○○	274,740	277,260	-2,520
	○○○	609,920	773,870	-164,250
	○○○	712,900	777,920	-65,020
	○○○	794,340	866,650	-72,310
	○○○	149,130	54,410	94,720
	○○○	522,600	326,890	195,710
합계		33,628,514	33,967,260	-309,046(㉠)

※ 오류로 집행된 사학연금(㉠)과 건강/요양보험료(㉡) 총 6,178,787원은

- 실지감사 전인 2019. 9. 22.에 1,000,000원을 보전
- 실지감사 후인 2019. 10. 2.에 5,178,787원을 보전 완료함

조치할 사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 ① 앞으로는 관할 소속 유치원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케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효성유치원

내 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의 범위)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 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 효성유치원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행정실장 □□□은 소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방계획서작성, 소방시설점검, 소방

훈련 등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월별 작성하여야 하는 소방점검표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인 원장 ○○○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 ① 앞으로는 관할 소속 유치원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케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관련 안전사고 예방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효성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따라 유치원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집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제33조(지출의 방법)에 의거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및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규정된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등의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안전교육 길라잡이」에서는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와의 차량계약서에 유아 안전조치 조항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대책(차량연식, 종합보험 가입, 차량상태, 운전자 자격 및 의무사항, 운전자 음주 금지조항, 계약조건 위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 차량 운행 계획서 제출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효성유치원에서는 [표]와 같이 2016 ~ 2018학년도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운수업체와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상태, 운전자 자격, 종합보험 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지 않는 등 총 16회(집행액 9,040,000 원)의 차량 임차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체험학습 차량 임차 관련 안전사고 예방 업무 부적정 내역

[금액: 원]

회계 연도	지출일자	적 요	계정과목	결의 번호	지출액	부적정 내용
2016	2016.04.29.	견학차량비	현장학습비	279	200,000	운전자 자격, 차량상태, 보험 가입, 음주운전 등 미확인
	2016.05.12.	소풍차량비	현장학습비	340	500,000	
	2016.10.22.	소풍차량비	현장학습비	1130	1,000,000	
	2016.12.31.	****차량비	교통비	1515	1,000,000	
	소 계	4회			2,700,000	
2017	2017.04.11.	견학차량비	현장학습비	198	250,000	운전자 자격, 차량상태, 보험 가입, 음주운전 등 미확인
	2017.04.25.	견학차량비	현장학습비	291	200,000	
	2017.05.29.	갯벌체험차량비	현장학습비	458	1,400,000	
	2017.07.03.	수영장차량비	현장학습비	674	540,000	
	2017.10.25.	견학차량비	현장학습비	1246	750,000	
	2018.01.25.	7세 졸업여행	교수학습활동비	1721	300,000	
	2018.02.09	견학차량비	현장학습비	1788	750,000	
	소 계	7회			4,190,000	
2018	2018.05.02.	****견학	행사비	334	500,000	운전자 자격, 차량상태, 보험 가입, 음주운전 등 미확인
	2018.05.09.	견학차량비	행사비	367	250,000	
	2018.05.24.	견학차량비	행사비	427	250,000	
	2018.06.10.	견학차량비	행사비	511	250,000	
	2018.10.25.	소풍차량비	행사비	1176	900,000	
	소 계	5회			2,150,000	
합 계	16회			9,040,000		

조치할 사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 ① 앞으로는 관할 소속 유치원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케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물품 출납 관리 및 처분 부적정

관 계 기 관 효성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에 의거 학교(유치원)의 물품 관리자는 학교의 장으로 하고,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규칙 제50조(물품의 관리)에 따라 물품 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하고, 제51조(불용품의 처리)에 따라 학교(유치원)의 물품 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하며,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학교(유치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또한, 같은 규칙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따라 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효성유치원에서는 [표]와 같이 원아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텃밭에 용품 보관 등을 목적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설치한 후, 그 사용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유치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 등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물품의 불용·매각·관리전환 등의 절차 없이 원장이 임의로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경기도 김포시 **읍 **리)의 개인 △△△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유치원의 재정에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유치원의 물품관리 및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물품 출납 관리 및 처분 부적정 내역

[금액: 원]

품명	구입일 (지출일)	구입액 (지출액)	구입목적	부적정 내역		
				무상 공여일	공여대상	비고
컨테이너 박스	2017.03.20.	2,000,000	뒷밭 관리 용품 및 교재교구 보관	2018. 9~10월경 (추정)	△△△	선물

※ 2,000,000원은 실지감사 후인 2019.10.2.에 보전 완료함

조치할 사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 ① 앞으로는 관할 소속 유치원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케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효성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효성유치원 내부규정」 제25조(보수의 지급) 제4항(경조사지급)에 따라 경조사비의 지급 대상은 소속 교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경조사의 구분에 따라 경조사비 지급액이 [표1]과 같이 정하여져 있다.

[표1] 경조사 구분 및 지급액

경조사 구분	지급액	경조사 구분	지급액
본인 결혼식	30만원 이내	조부모 조의금	10만원
직계가족의 사망	20만원	형제자매의 사망	10만원

그런데, 효성유치원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경조사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표2]와 같이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여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경조사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2] 경조사비 부당 집행 내역

[금액: 원]

회계 연도	지출일	지급액	정당 지급액	과오 지급액	지급 사유	지급대상	부적정 내용
2016	2016.12.04.	200,000	100,000	100,000	조모 사망	교사 ○○○○	지급액 초과
	2016.04.04.	100,000	-	100,000	시모 사망	㉠㉠유치원 원장	지급대상 아님
	2016.04.04.	100,000	-	100,000	시부 사망	●●유치원 원장	지급대상 아님
2017	2017.04.21.	200,000	100,000	100,000	조모 사망	교사 ◇◇◇	지급액 초과
합 계		600,000	200,000	400,000			

※ 오류로 집행된 경조사비 400,000원은 실지감사 후인 2019.10.2.에 보전 완료함

조치할 사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 ① 앞으로는 관할 소속 유치원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케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통학버스 대금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효성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책임)에 따라 유치원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집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에 따라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 등으로 정당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효성유치원에서는 2016~2018회계연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임대차량으로 운영하면서 아래의 [표]와 같이 업체명의 차량에 대해 청구서(세금계산서) 등을 징구하여 버스업체로 임차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와 임차계약을 체결 후 대금지급과 관련된 일체 서류의 징구없이 통학버스 임차대금 총 66,0625,000원을 부정당채주인 운전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통학버스 임차대금 정당채주 미지급(임차대금을 운전자에게 직접 지급) 내역
(단위 : 원)

연도	차량번호	통학차량 소유자 현황	운전자성명	이체금액	비고
2016	인천**바***0	(주)○○관광	□□□	21,190,000	
2017	인천**바***0	(주)○○관광	□□□	22,825,000	

2018	인천**바***0	(주)○○관광	□□□	22,610,000	
계				66,625,000	

조치할 사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 ① 앞으로는 관할 소속 유치원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케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 계 기 관 효성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효성유치원에서는 2016~2018학년도 회계 중 유치원 운영비에서 학교사립 유치원 총연합회비 명목으로 [표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2,85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1] 유치원 연합회비 지급 내역

[단위 : 원]

회계연도	지출일자	지급내역	금액	비고
2016	2016-04-06	연합회비	650,000	2,550,000원 실지감사 전 (2019.9.22.)보전
	2016-12-06		300,000	
2017	2017-04-11		650,000	
	2017-09-09		300,000	
2018	2018-04-18		650,000	
	2018-11-01		연합회비(2학기)	
총 합계금액			2,850,000	

¹⁾김포교육지원청 상반기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계획알림(2019.5.3.)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2019.6.4.) 보전

또한 [표2]의 행정실장 □□□ 소유의 차량 관리를 위해 아래의 [표3~5]와 같이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및 수리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2] 차량현황

연번	차종	차량번호	차량소유주	연식	비고
1	***HD	**로***0	□□□	2010년	

[표3] 차량보험료 지급내역

[단위 : 원]

회계연도	지출일자	지급금액	보험사	비고
2016	2016-10-10	<u>990,070</u>	***보험 주식회사	실지감사 후 (2019.10.2.)보전
2017	2017-08-28	702,860		실지감사 전 (2019.9.22.)보전
총 합계		1,692,930		

[표4] 자동차세 지급내역

[단위 : 원]

회계연도	지출일자	지급금액	지급처	비고
2016	2017-01-17	<u>175,900</u>	김포시	실지감사 후 (2019.10.2.)보전

[표5] 주유비와 수리비 지급내역

[단위 : 원]

회계연도	지출일자	적요	지급금액	비고
2016	2016-07-21	주유	<u>50,000</u>	실지감사 후 (2019.10.2.)보전
	2016-08-03	주유	50,000	
	2016-08-07	주유	38,000	실지감사 전 (2019.9.22.)보전
	2016-08-21	주유	50,000	
	2016-09-02	수리(엔진오일교환외)	<u>31,950</u>	실지감사 후 (2019.10.2.)보전
	2016-09-22	주유	10,000	실지감사 전 (2019.9.22.)보전
2017	2017-04-04	수리(엔진오일교환외)	<u>36,950</u>	실지감사 후 (2019.10.2.)보전
	2017-11-27	주유	50,000	실지감사 전 (2019.9.22.)보전
2018	2018-12-27	자동차백미러 수리	106,000	2019.6.12.보전 ²⁾
총 합계			422,900	

²⁾김포교육지원청 상반기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계획알림(2019.5.3.)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2019.6.4.=) 보전

조치할 사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 ① 앞으로는 관할 소속 유치원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케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개인현금 및 카드지출)

관 계 기 관 효성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2조(지출의 원칙)에 의거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제33조(지출의 방법)에 의거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하며,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및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규정된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등의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2015년 11월에 실시한 「2015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 업무별 연수」, 2016년 8월~9월에 실시한 「2016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 업무별 연수」, 2017년 9월~12월에 실시한 「2017년 사립유치원 현장 맞춤형 회계 컨설팅(연수)」 교육자료에 의거, 유치원회계 지출 시에는 예산 집행 품의, 견적서 징구, 계약, 납품(준공) 및 검수, 대가지급, 장부정리 및 증빙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증빙서류 편철시 지출결의서, 무통장 입금표(영수증 등), 청구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청구 서류, 계약서, 견적서, 계약구비 서류, 품의요구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효성유치원에서는 2016~2018학년도 기간 내 각종 유치원 운영비 집행 시 유치원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교직원이 대금을 지급(현금 및 카드로 결제)

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지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붙임 회계 부적정 집행 내역 1부.

조치할 사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 ① 앞으로는 관할 소속 유치원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케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계 부적정 집행 내역(개인 현금 및 카드 지출)

(단위:원)

연번	지출일	세목	지출내역	입금자명	지출액	비고
1	2016-04-06	공통운영비	***구입	○○○	212,390	
2	2016-04-06	특정목적사업비	종일반간식비(토마토외)	○○○	94,620	
3	2016-04-08	특정목적사업비	종일반간식비(빵)	○○○	11,620	
4	2016-04-11	공통운영비	건물공사재료비	○○○	78,430	
5	2016-05-26	공통운영비	기사님업무식대	○○○	81,000	
6	2016-05-29	공통운영비	복사용지 구입	○○○	108,420	
7	2016-06-13	공통운영비	살충기외구입	○○○	105,370	
8	2016-07-11	공통운영비	락스외구입	○○○	76,540	
9	2016-07-11	특정목적사업비	종일반간식비	○○○	64,700	
10	2016-08-16	현장학습비	농장동물관리비(염소 수술비)	○○○	983,300	
11	2016-08-16	공통운영비	교직원회식비	○○○	96,000	
12	2016-09-03	현장학습비	농장관리비(강아지치료비)	○○○	210,500	
13	2016-12-20	급식비	압력밥솥외 부식비	○○○	575,150	
14	2017-8-27	방과후반비	방과후반간식(미니소프트케익외)	○○○	92,170	
15	2017-12-13	공통운영비	우편요금	○○○	2,910	
16	2018-07-12	특별급식비,간식비	방과후간식(****놀이머외)	○○○	40,560	
17	2018-08-08	수용비	교실문 안전가드구입	○○○	9,490	
18	2019-02-21	수용비	회장실용품구입(크라넥스테코외)	○○○	28,980	
					2,872,150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 미첨부]
 관 계 기 관 효성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유치원은 제54조(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에 의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의거 유치원은 강사료 등의 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는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유치원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2조(지출의 원칙)에 의거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며, 제33조(지출의 방법)에 의거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하며,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및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규정된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등의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2015년 11월에 실시한 「2015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 업무별 연수」, 2016년 8월~9월에 실시한 「2016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 업무별 연수」, 2017년 9월~12월에 실시한 「2017년 사립유치원 현장 맞춤형 회계 컨설팅(연수)」 교육자료에 의거, 유치원회계 지출 시에는 예산 집행 품의, 견적서 청구, 계약, 대가지급, 장부정리 및 증빙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증빙서류 편철 시 지출결의서, 무통장 입금표(영수증 등), 청구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청구 서류, 계약서, 견적서, 계약구비서류, 품의요구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효성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거래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대금을 집행하는 등 지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붙임 효성유치원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미비 내역 1부.

조치할 사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은

- ① 앞으로는 관할 소속 유치원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케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효성유치원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미비 내역

[단위 : 원]

연번	지출일	세목	지출내역	거래처명	지출액	이상내역
1	2016-03-02	시설비	텃밭공사비	□ □ □ □	1,400,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2	2016-03-08	교수학습활동비	가위의문구류구입	□ □ □ □	498,060	(세금계산서 미첨부)
3	2016-03-16	현장학습비	딸기농장체험비	□ □ □ □	360,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4	2016-03-18	교수학습활동비	원아도시락 구입	□ □ □ □	910,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5	2016-03-23	현장학습비	딸기따기체험비	□ □ □ □	270,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6	2016-03-31	현장학습비	딸기따기체험비	□ □ □ □	369,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7	2016-04-08	시설비	주차장공사비	□ □ □ □	2,100,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8	2016-04-25	교수학습활동비	문구구입(스텝프외)	□ □ □ □	673,760	(세금계산서 미첨부)
9	2016-04-26	교수학습활동비	교구구입(만년스텝프)	□ □ □ □	2,327,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10	2016-04-29	공동운영비	부식비(우유)	□ □ □ □	952,700	(세금계산서 미첨부)
11	2016-05-03	교수학습활동비	어린이날선물구입	□ □ □ □	724,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12	2016-05-19	원복비	동복체육복 구입	□ □ □ □	500,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13	2016-06-07	공동운영비	부식비(5월우유)	□ □ □ □	856,150	(세금계산서 미첨부)
14	2016-06-23	방과후반비	6월체육강사료	□ □ □ □	330,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15	2016-06-24	공동운영비	부식비(우유)	□ □ □ □	700,760	(세금계산서 미첨부)
16	2016-07-06	현장학습비	감자캐기체험비	없음	920,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17	2016-09-02	공동운영비	부식비(우유)	□ □ □ □	606,650	(세금계산서 미첨부)
18	2016-11-04	교수학습활동비	동물노트의한자구입	□ □ □ □	415,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19	2016-11-04	현장학습비	땅콩체험학습비	없음	960,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20	2016-11-17	현장학습비	무우뽑기외각뚜기담기체험비	없음	984,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21	2016-11-29	공동운영비	부식비(우유)	□ □ □ □	1,008,950	(세금계산서 미첨부)
22	2016-12-06	교수학습활동비	성탄선물구입	없음	1,421,200	(세금계산서 미첨부)
23	2016-12-20	교수학습활동비	예술제의상대여비	□ □ □ □	2,448,160	(세금계산서 미첨부)
24	2016-12-20	교수학습활동비	행사진행비	□ □ □ □	200,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25	2017-02-15	교수학습활동비	진급생선물비	없음	225,720	(세금계산서 미첨부)
26	2017-03-03	재료비	싸인펜외 문구재료비	□ □ □ □	994,160	(세금계산서 미첨부)
27	2017-04-14	교수학습활동비	동복체육복	□ □ □ □	2,695,500	(세금계산서 미첨부)
28	2017-04-21	교수학습활동비	어린이날선물구입	□ □ □ □	768,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29	2017-04-24	시설비	싱크대교체비	□ □ □ □	520,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30	2017-05-24	교수학습활동비	여원복비	□ □ □ □	6,500,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31	2017-09-11	교수학습활동비	체육복 구입	□ □ □ □	422,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32	2018-03-08	교재,교구구입비	문구대금(건출지외)	□ □ □ □	507,550	(세금계산서 미첨부)
33	2018-03-22	교재,교구구입비	동복체육복구입	□ □ □ □	3,815,454	(세금계산서 미첨부)
34	2018-04-23	행사비	소풍차량대여비	□ □ □ □	460,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35	2018-05-02	행사비	□ □ □ □ 견학차량비	□ □ □ □	500,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36	2018-05-02	방과후교육,돌봄비	방과후문구대금(40p파일)	□ □ □ □	273,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37	2018-06-16	행사비	어린이날선물 티셔츠 구입	□ □ □ □	2,566,000	(세금계산서 미첨부)
총 합계금액					42,182,774	